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3.



박왕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박왕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, 안 제4조는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
(박왕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00822025
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3. 4.
발의자: 박왕규, 배지훈, 홍복조,
원종진, 윤권근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~안 제8조)
- 라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대구광역시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역사문화인물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·활동하며 역사·문화·예술·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.
- “기념사업”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,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
 - 역사문화인물의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·설치 사업
 -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·설치 사업
 -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
 -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
 -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

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
2.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
3.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
2.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
3.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
4.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<생략>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~다. <생략>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(이하 생략)